

1_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리스트(71개 기관)

[표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리스트(71개소)

연번	기관명	지원 여부 (2019년 5월 기준)	유형	위치 (자치구)
1	도깨비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북구
2	바라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양천구
3	징검다리 거점공간 나도꽃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노원구
4	스쿨 제프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도봉구
5	꿈꾸는다락방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6	청소년 도서관 작공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7	하늘을 품는 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동구
8	1318상상발전소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중랑구
9	징검다리 몽담몽담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관악구
10	징검다리 거점공간 외락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노원구
11	징검다리 거점공간JU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12	틱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북구
13	캐틴스쿨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마포구
14	사랑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15	돈보스코영상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양천구
16	꽃피는학교 서울학사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서대문구
17	삼각산재미난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북구
18	내일새싹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양천구
19	자오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20	성장학교 별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21	우리들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22	공간민들레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23	대안학교 한들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24	하자작업장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25	영세프스쿨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26	로드스콜라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27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용산구
28	은평씨앗학교(청소년대안공간돋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연번	기관명	지원 여부 (2019년 5월 기준)	유형	위치 (자치구)
29	이룸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남구
30	성미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마포구
31	다음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서초구
32	대안학교 원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금천구
33	인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34	꿈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동구
35	꿈이있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구로구
36	아름다운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광진구
37	동방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38	꿈틀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종로구
39	단재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40	꿈이룸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41	티움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중랑구
4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43	사람사랑나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44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늘푸른자립학교)	지원(서울시여성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45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지원(서울시 여성정책과)	설문 미참여	강북구
46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미지원	공간형	성북구
47	문화놀이터 와플(Wild Flower)	미지원	공간형	강동구
48	사)금강학교	미지원	공간형	구로구
49	창창한직업장학교	미지원	공간형	노원구
50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강남구
51	남북사랑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구로구
52	IT기독교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용산구
53	숲나-플레10년	미지원	전일제형	서초구
54	발도르프학교 '초록달아침'	미지원	전일제형	성북구
55	요한기독교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광진구
56	이야기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종로구
57	인투비전스쿨	미지원	전일제형	송파구
58	꿈땅자연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영등포구
59	소보사 대안학교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미지원	전일제형	강북구
60	서울솔로몬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강서구
61	반석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서초구
62	빛의자녀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성동구
63	디아글로벌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관악구
64	즐거운家	미지원	(설문 미참여)	송파구
65	K2 인터네셔널 코리아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성북구
66	달꿈예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강북구
67	전인기독교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송파구
68	TOM예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양천구
69	꿈의숲 기독교혁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마포구
70	지구여행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종로구
71	미래소망스쿨	미지원	(설문 미참여)	노원구

2_서울시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비율(2018학년도)

[표 2] 서울시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비율(2018학년도)

(단위: 명, %)

		합계		유예					면제			
		학업중단 학생 수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소계	질병	장기 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전체 (초+중)	학생 수	7,215	1,283	3,458	64	3	2,266	1,125	3,757	1	3,601	155
	비율	100.00	17.78	47.93	0.89	0.04	31.41	15.59	52.07	0.01	49.91	2.15
초등학교	학생 수	4,792	516	1,695	17	2	1,274	402	3,097	1	2,984	112
	비율	100.00	10.77	35.37	0.35	0.04	26.59	8.39	64.63	0.02	62.27	2.34
중학교	학생 수	2,423	767	1,763	47	1	992	723	660	0	617	43
	비율	100.00	31.65	72.76	1.94	0.04	40.94	29.84	27.24	0.00	25.46	1.77

		합계		자퇴						퇴학 (품행)	유예/ 면제	제적
		학업중단 학생 수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고등학교	학생 수	4,622	3,277	4,520	249	35	1,087	1,085	2,064	66	11	25
전체	비율	100	80.65	96.49	4.71	1.05	27.90	14.28	48.55	2.89	0.36	0.27

- 주: 1. 는 실질 학업중단 학생을 나타냄.
 2. 실질 학업중단 학생: 가사, 부적응,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질병, 사고, 유학 등의 이유 제외)
 3. 고등학교의 유예, 면제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5. 고등학교 자퇴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3_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설문지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2019. 1. 29.)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파악 및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관(학교)별로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연구원

※ 해당 항목에 맞춰 ()안에 내용을 기입하거나 “v”표시를 해주시 바랍니다.

A. 기본 현황	
A1. 기관(학교)명	()
A2. 설립년도	()년
A3. 기관(학교) 소재지	서울시 ()구 ()동
A4. 설립기관과 운영기관 동일여부	()①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이 동일함(☞A4b로 이동) ()②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이 상이함(☞A4a로 이동)
A4a. 설립기관 유형 및 기관명 (☞응답 후 A4b로 이동)	()① 재단법인(기관명:) ()② 사단법인(기관명:) ()③ 협동조합(기관명:) ()④ 비영리민간단체(기관명:) ()⑤ 비등록 단체(단체명:) ()⑥ 기타(어떤 유형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A4b. 운영기관 유형 및 기관명	()① 재단법인(기관명:) ()② 사단법인(기관명:) ()③ 협동조합(기관명:) ()④ 비영리민간단체(기관명:) ()⑤ 비등록 단체(단체명:) ()⑥ 기타(어떤 유형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A5. 통학방법	()① 기숙형 ()② 통학형 ()③ 선택형(기숙사형+통학형)
A6. 모집(참여) 대상	()① 학교 밖 청소년(세부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세부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중 특정대상을 모집할 경우 기입 (예: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② 학교 밖 청소년 및 일반청소년
A7. 운영방식	()① 학교형태의 전일제 운영(☞B1a로 이동) ()② 중·단기 프로그램 및 거점공간 중심 운영(☞B1b로 이동)

B.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2018년 기준)			
B1a. 학교형태의 전일제 운영(도시형 대안학교 혹은 전일제형 운영기관만 응답)			
1) 기본 운영과정	()① 초등학교 과정(년) ()② 중학교 과정(년) ()③ 고등학교 과정(년) ()④ 초·중학 통합과정(초+중)(년) ()⑤ 초·중등 통합과정(초+중+고)(년) ()⑥ 중등 통합과정(중+고)(년)		
2) 기타과정 운영 ※ 해당 학교만 응답	후기청소년 과정 (년) 기타과정 (과정명 기입), (년)		
3) 참여자 수 ※ 정원규정이 없을 시 현원만 기입 (※응답 후 B2로 이동)	초등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중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고등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후기 청소년 과정	정원()명	현원()명
B1b. 중·단기 프로그램 중심 운영 (징검다리 거점공간 혹은 중단기 프로그램 운영기관만 응답)			
1) 모집(참여) 대상(복수응답 가능)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후기 청소년(20세~24세)		
2) 연간 중·단기 프로그램 수 ※ 1달 이상 지속 프로그램	연간 총()개		
3) 이용자수 (실인원) (※응답 후 B2로 이동)	중·단기 프로그램 참여자 수	연간 이용자 수()명 ※ 2018년 1년 동안 1달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인원 기입. 한 사람이 A프로그램, B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할 경우 1명으로 계산	
	공간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명 ※ 한명이 여러번 이용할 경우 1명으로 계산	

B2. 운영방식 및 교육내용(공통응답)	
4) 학기(대표 프로그램) 운영방식	()① 상하반기 운영(1/2학기) ()② 분기별 운영(1/2/3/4/학기) ()③ 계절학기 운영(여름/겨울) ()④ 기타()
5) 기관(학교) 설정 교육(사업)목표	()
6) 중점 교육내용 (2가지 응답)	()① 문화예술교육 중심 ()② 인문교육 중심 ()③ 심리적 치유와 성장 중심 ()④ 진로·직업지도 중심 ()⑤ 생태교육 중심 ()⑥ 기타(세부내용 내용기입)

C. 인력 및 인건비 현황(2018년 기준)		
C1. 대표	()① 법인 혹은 단체 대표와 기관(학교) 대표 동일(겸임) ()② 기관(학교)대표 별도 고용	
C2. 상근교사	1) 인원	총 ()명 ※ 교사업무 병행 대표자 포함 서울시 지원 ()명
	2) 급여	()① 동일급여()천 원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3)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년 ※ 예시: a교사 2년, b교사 5년, c교사 10년일 경우 17/3 = 5.7년
	4) 자격증	교원자격증()명 청소년지도사()명 청소년상담사()명 사회복지사()명 평생교육사()명 그 외 기타 자격증 자격증명(), ()명
	5)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삶을 위한 교사대학 협동조합의 대안교육 교사양성 과정 이수자 ()명

C3. 비상근교사 /강사	1) 비상근 교사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교사 인력	
	2) 강사	유급 ()명	무급(자원) ()명
C4. 행정 인력	1) 인원	상근 ()명 ※ 행정업무 병행 교사 제외	비상근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인력
	2) 급여	()① 동일급여()천 원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C5. 급식 인력	1) 인원	상근()명	비상근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인력
	2) 급여	()① 동일급여()천 원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C6.기타 인력 (해당 기관만 응답)		(기타인력 세부내용 기입), 인원 수 ()명	

D. 시설 현황(2019년 현재 기준)

D1. 소유 및 임차 현황		()① 소유(※D2로 이동) ※운영단체가 공간을 소유한 경우 ()② 임차(※D1a로 이동) ※ 공공시설 위탁 사용도 임차에 해당
D1a. 임차 현황		()① 전세(※D1b로 이동) ()② 월세(연세 포함)(※D1b로 이동) ()③ 무상(※D1c로 이동)
	D1b. 임대료 (※응답 후 D2로 이동)	보증금()천 원 월 임대료()천 원
	D1c. 무상임차일 경우 소유자	()① 민간(개인, 단체 모두 포함) ()② 공공

D2. 사용 공간과 면적		공간 유무	*공간 유무에서 있음을 선택했을 시 응답	
			공간(교실) 수	총 면적
1) 사무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실	()m ²
2) 교육 공간	일반교실 ※ 책상 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된 공간. 다목적실을 교실로 사용할 경우 일반교실로 기입.	()① 있음 ()② 없음	()실	()m ²
	특별활동 교실 ※ 예: 과학실, 미술실 등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실	()m ²
3) 급식 시설	조리시설	()① 있음 ()② 없음	-	()m ²
	식사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4) 운동장		()① 있음 ()② 없음	-	()m ²
5) 강당		()① 있음 ()② 없음	()실	()m ²
6) 기타 공간		()① 있음 (※6.1로 이동) ()② 없음(※7로 이동)		
6.1) 기타 공간 세부내용		예시: (카페공간)	(1)실	(33)m ²
		(공간명 기입)	()실	()m ²
7) 총 사용면적		()m ² ※ 일부사업으로 대안학교 운영 시 전용사용면적 기준(예: 청소년수련관 등)		
8) 시설 사용방식		()① 단독사용 ()② 전체 시설 공동사용 ()③ 시설 일부 공동사용		
9) 외부시설 사용 여부		()① 외부시설 사용(상세내용 기입) ()② 외부시설 미사용		

E. 이용자 부담 경비(2018년 기준)		
항목	유무	*유무에서 있음을 선택했을 시 응답 세부내용(학생 1인 기준)
E1. 기부금/발전기금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2. 예약금 ※ 전학·졸업시 환급 가능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3. 입학금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4. 수업료 및 프로그램 비용 ※ 급식비 미포함. 분리 기입 ※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프로그램 기준으로 기입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운영개월 수:()개월 ※ 학기별, 분기별 책정 시 월 단위로 기입
E5. 급식비(간식비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E6. 기숙사비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E7. 현장학습비 (여행경비 등)	()① 있음 ()② 없음	연()천 원 ※ 1인 기준 연간 총액
E8. 학습재료비	()① 있음 ()② 없음	연()천 원 ※ 1인 기준 연간 총액

F. 서울시 지원 및 외부 지원 현황(2018년 기준)			
F1. 서울시 지원 항목	지원유무	*지원 받았을 시 응답	
		연간 지원인원	연간 지원 총액
1) 급식비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2) 인턴십 프로그램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3) 수업료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F2. 외부 지원내용 (해당 기관만 응답)	지원처	연간 지원인원	연간 지원 총액
예: (저소득층 수업료지원)	(V)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2)명	연간(2,000)천원
()	()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명	연간()천 원
()	()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명	연간()천 원

G. 학교 연간 재정 현황(2018년 기준)		
G1. 2018년 세입 기준	금액	퍼센트
1) 정부보조금	()백만 원	자동계산
2) 운영주체 보조금	()백만 원	자동계산
3) 일반후원금	()백만 원	자동계산
4) 사용자 이용금	()백만 원	자동계산
5) 기타수입	()백만 원	자동계산
합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G2. 2018년 세출 기준	금액	퍼센트
1) 인건비	()백만 원	자동계산
2) 프로그램 운영비	()백만 원	자동계산
3) 시설 운영비(임대료 포함)	()백만 원	자동계산
4) 사무비	()백만 원	자동계산
5) 기타(예비비 포함)	()백만 원	자동계산
합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응답자 정보	성함(), 연락처() ※ 설문 응답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시 연락을 드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_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19.1.29.)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파악하여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서울연구원

Part1.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인지 및 개념과 지향 인식

올해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19.1.29.)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서울시가 그간 지원해 오던 도시형 대안학교보다 한 차원 높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과 발견 등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Part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근접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5.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과 더불어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 ② 지정 기준은 불필요하다.
- ③ 잘 모르겠다.

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의 준거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 함	동의 안 함	동의	매우 동의
6.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2.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3.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 고려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4. 기타 ()				

7. 다음에 제시된 항목이 지정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우선 순위
7.1. 설립(또는 운영) 목표	①	②	③	
7.2. 시설과 공간(면적)	①	②	③	
7.3.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①	②	③	
7.4.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	①	②	③	
7.5. 운영 기관의 독립성	①	②	③	
7.6. 예산 및 학교 회계의 투명성	①	②	③	
7.7.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①	②	③	

8. 다음의 시설 및 공간 기준 항목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마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8.1. 교사(校舍) 면적	①	②	③
8.2. 일반교실	①	②	③
8.3. 특별활동실	①	②	③
8.4. 실내/실외 체육시설	①	②	③
8.5. 운동장	①	②	③
8.6. 강당	①	②	③
8.7. 취사실 및 식당	①	②	③

15.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서울형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불필요
15.1. 서울형 대안학교 컨설팅 실시	①	②
15.2. 서울형 대안학교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①	②
15.3.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	①	②
15.4.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매뉴얼 마련	①	②
15.5. 서울형 대안학교 예·결산 시스템 구축	①	②
15.6.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체 구축	①	②

1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응답자 소속기관 및 응답자 개인 특성

<응답자 소속 기관 특성>

-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①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전일제 형태 운영(도시형 대안학교)
 ② 프로그램 및 공간 중심 운영(징검다리 거점공간)
-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교사 인력과 행정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상근인력 기준)
()명
-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현재 서울시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응답자 개인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나이는? 만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4.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주 업무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교사 ② 행정직 ③ 기타

5. 귀하는 현 기관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 _____년

5.1. 귀하의 대안교육 관련 총 경력은 얼마입니까? _____년

6.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교원 자격증 ②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청소년상담사 ⑤ 평생교육사 ⑥ 없음
⑦ 기타()

7. 귀하의 현재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세금 및 4대 보험 포함 기준)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150만 원 미만
③ 150만 원~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250만 원 미만
⑤ 250만 원~300만 원 미만 ⑥ 300만 원 이상
⑦ 무급

8. 귀하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급여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_대안학교 유사 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표 3] 대안학교 유사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사업 및 시설	직위	자격 기준
다함께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종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지역아동 센터 (보건복지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배치기준 아동 30명 이상 생활복지사 2명(50명 초과 시 1명 추가)

[표 3 계속] 대안학교 유사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사업 및 시설	직위	자격 기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 족부)	팀장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 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담임	1) 기운영 : 현행유지 2)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내에서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초등돌봄 교실 (교육부)	돌봄 전담사	1)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절차 마련 ※ 자격조건에 상응하지 않은 자인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자격취득 또는 소정의 교육이수 등 조건부 채용
청소년 문화의집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배치(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이상을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명 당 1급, 2급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이상을 추가로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1)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2) 배치 예: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서울형 어린이집		2020년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안) 중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에 따라 가점 지표 예: 1급 보육교사가 전체 보육교사의 50%이상(+3점 가점), 70%이상(+5점 가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2018. 12.,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한국교육개발원,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보건복지부, 2019,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2., “서울형 어린이집 개정지표 시범평가 계획 (붙임1)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지표(안)”.